

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 
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
(장영준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25-158 |
|------------|-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4.

발 의 자 : 장영준 · 강동오 · 권인순

남해석 · 신종갑 · 이상원

장정희 · 차해영 · 채우진

최은하 · 홍지광

## 1. 제안이유

일회성 폐기물 중 하나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현수막, 친환경 소재, 재활용에 대하여 정의하고,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
나. 구청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계시,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·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및

제5조)

다.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### 3. 관계법령

- 1)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제1항~제3항
- 2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
- 3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가목
- 4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7호

### 4. 조례안 : 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### 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5. 11. 7. ~ 11. 12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현수막”이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.
2. “친환경 소재”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.
3. “재활용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· 시행
2.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

3.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4조(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)**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.

**제5조(재정지원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
2.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교육 및 홍보)**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

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 
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제12조제2항에 해당

**3. 미첨부 사유**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**4. 작성자**

|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정훈희 |
| 연락처    | 02-3153-9455    |

# 【관 계 법령】

## 환경정책기본법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  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  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., 2021. 1. 5.>

##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(기기,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3. 24., 2025. 10. 1.>  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·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[전문개정 2008. 3. 21.] [제20조에서 이동 <2008. 3. 21.>]

## 폐기물관리법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129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 5. 17., 2009. 6. 9., 2010. 1. 13., 2010. 7. 23., 2015. 1. 20., 2017. 1. 17., 2025. 10. 1.>

7. “재활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  
가. 폐기물을 재사용·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

##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35811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“광고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 <개정 2014. 12. 9., 2016. 7. 6., 2018. 5. 28., 2019. 4. 30.>

7. 현수막: 천·종이·비닐 등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, 지주,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